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호 2008. 7. 2 (수)

【조 례】

- 조례제212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3
- 조례제2128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6
- 조례제212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7

【규 칙】

- 규칙제1129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0

【고 시】

- 고시제2008-46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13
- 고시제2008-47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14
- 고시제2008-48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15
- 고시제2008-49호 2008년도 하반기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고시.....16

【공 고】

- 공고제2008-377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 17
- 공고제2008-381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8
- 공고제2008-382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 22
- 공고제2008-384호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 공고제2008-385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25
- 공고제2008-387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6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01.

정선군조례 제212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 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희생·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4. 보훈관련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위문
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7. 군과 관련된 선양자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8.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거리, 공원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 담화문 발표시 희생·공헌자의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제8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2. 제증명 수수료 면제. 단,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제외
3.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4.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보훈문화 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실시(제6조)
-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일정 시설물의 시설이용료 및 진료비 감면 등 복지지원(제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01.

정선군조례 제2128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개정이유

- 본 조례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4.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 2008. 7. 1부터 시행되고 장기요양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2008.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어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개정
 -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개정 (제1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01.

정선군조례 제2129호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정선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가. 개정이유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①지방자치단체 업무상 특성에 맞지 않아 ②여비 지급의 어려움과 ③집행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① 자치단체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무박)이 대부분(98%)으로 실비 정산에 따른 증빙자료 징구 지난
- ②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기교육과정(1개월이상)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 미리 사용 후 사후정산 해야 하거나 실질교육비 감소 등으로 인한 애로 발생 및 정산상 어려움 가중(하숙 등)
- ③ 집행단가 상승(정액제 30,000원 ⇒ 정산제 40,000원~52,000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나. 주요내용

- **여비의 지급구분(제3조)**
 -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조항 적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제4조 신설)**
 - 국내여비 지급기준 마련(정산제에서 ⇒ 정액제로 환원)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제5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여비규정 개정조항 적용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01.

정선군규칙 제1129호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이 조례는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읍·면별 구분 작성)

(단위 : 원)

연번	지원 대상자			보 험 료			현지확인여부 (확인일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계								

※ 현지확인여부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확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읍·면별 구분 작성)

(단위 : 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보 험 료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국민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계							

가.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4.27. 제정 2008.7.1부터 시행되고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시행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안 제1조,제2조)
 - － 제1조중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 － 제2조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

정선군고시 제2008-46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6. 20.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 표 자	정선국도유지건설 사무소장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9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하 천 명		골지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606-6번지		
	허가량	A=9,500m ² V=22,000m ³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당초 : 2007년 04월 05일 ~ 2008년 06월 30일 변경 : 2007년 04월 05일 ~ 2008년 09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국도42호선 덕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성토용재 채취		

정선군고시 제2008-47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2차)을 농어촌정비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6. 23.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 규 모 : 법정리 3, 행정리 5, 자연마을 15
- 면 적 : 7,008ha(농경지 330, 임야 6,501, 기타 177)
- 가구 및 면적 : 187호(농가 121, 비농가 66), 460명(남 250, 여 210)
- 사업내용(2차) : H/W부분 4개사업

－ 산촌 테마도로, 야생화단지, 생약초 요양시설, 카르스트홍보관

4. 사 업 비 : 1,321,529천원(보조 1,203,302천원, 자부담 118,227천원)

※ 전체분 : 6,786백만원(보조 6,201백만원, 자부담 585백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08년 ~ 2009년(전체분 2007년 ~ 2011년)

6. 사업의 효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의 지속적 인 발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한국농촌공사 일괄위탁 시행)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시 제2008-48호

하천 점용·사용 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6. 25.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주)성신미네필드		
	대 표 자	홍 진 모	주 소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21
하 천 명		지장천(지방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유평리 624번지선(740천)		
	허가량	A=3,716m ²	폐천부지 예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5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광물운반 가도(공작물)		

정선군고시 제2008-49호

2008년도 하반기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 2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08. 06. 25.

정 선 군 수

○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내역

구 분	무 게	과세표준(원)	적용기간	비고
소	600KG	4,000,000	2008.7.1~12.31	
돼지	100KG	240,000	2008.7.1~12.31	

정선군공고 제2008-377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12조 2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20.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김 수 현	주 소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21번지
소 하 천 명		덕산기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1-1번지(220번지선)		
	면 적	495m ²	폐천부지에 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6월 19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경작지(전)		

정선군공고 제2008-381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06. .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액의 확정적 명시(안 제2조)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매월 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5만원

나. 정기신청 외 연중 수시신청가능 및 신청서식 명시(안 제3조)

다. 수시 신청자에 대한 지급시기 결정(안 제4조)

라. 지급대상자 명단의 읍·면장 관리 및 변동사항 보고(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가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588
- 문의전화 : 033-560-2314

붙임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1부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매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제3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제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정선군공고 제2008-382호

소하천점용·사용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시행령 12조 2항(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25.

정 선 군 수

시행(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김 성 욱	주 소	정선군 남면 광덕리 161번지
소 하 천 명		광탄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 치	정선군 남면 광덕리 1181번지(161번지선)		
	면 적	210m ²	폐천부지에 상면적	“없음”
	기 간	2008년 07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목 적 및 사 유	대지진출입로		

정선군공고 제2008-384호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26.

정 선 군 수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취 지

가. 지방예산제도의 변화 및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계기로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경리관의 직무위임)중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1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 추정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안 제5조2항1호)

나. (재정사항합의) 조항 중

-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가 ⇒ 상한선 200만원이상으로
- 물품·제조·구매 100만원이상 ⇒ 200만원으로
-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 시책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변경
-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기타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조항이 추가로 신설됨. (안 제22조)

다.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안 제50조제3항)

라.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조항중 제6호의 기타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로 명칭변경과 제10호의 복리후생비가 삭제됨(안 제51조)

마.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영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안 제121조의2)

바.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안 제124조)

사.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다(안 제128조)

아. 기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별 일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3. 의 견 제 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은 2008년7월15일까지 정선군수 (참조 : 재무과장 ☎560-2271)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 공고 제2008-385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문곡-무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되었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6. 26.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로사업(문곡-무릉간 도로 확,포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공시송달대상자내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송달받을자		이 해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공부	실제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7-5-8	임	임	1,312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75-1	김상국	강원도 원주시 다계동 8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대방동 686-48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3-205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시시)압류 대하광역진흥공사 근저당 김석순 근저당

4. 수용시기 : 2008. 01. 10.
5. 공고기간 : 2008. 06. 26. ~ 2008. 07.10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
6.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건설도시과 ☎033-560-248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387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06. 27.

정 선 군 수

1. 규 칙 명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2. 개정취지

고한, 사북 지역의 광산 업체가 폐광 되고,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가 2008. 5. 1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나. 「광산근로자」 관련 조문등 삭제 (안 제1조~제2조, 제4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 정선군임대아파트
-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첨부조문 ⇨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 별표1 ⇨ 광산근로자 관련용어 삭제

다. 입주자 선정(공모)절차 신설 (안 제3조)

- 입주자 선정시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아파트 소재지, 동별 및 호수, 입주 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
-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①광산 근로자 재직 경력 세대주 ②무주택 세대주 순에 의하여 선정
- 상기 순위에서 경합 될 때에는 ①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②국가 유공자 ③부모 봉양자 ④기타 군수가 입주가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자 순으로 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07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재무과(전화 560-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편번호 : 233-804)
- 팩스 : 033-560-2587

라. 첨부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입주 부담금
3. 기타 아파트 임대엔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자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 한다.

1. 광산 근로자 재직경력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주

③ 제2항의 순위에서 경합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결정한다.

1. 광산 근로자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2. 국가 유공자 (보훈처 증명)
3. 부모 봉양자
4. 기타 군수가 입주가 타당 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4조(입주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보증금을 예탁하고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별표1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의한 순위자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 임대료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입 주 자 선 정 통 지 서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장소					

귀하께서는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 통보 하오니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주보증금 납입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계약시 준비사항)

1.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2. 손해보험 계약증서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아파트계약해지신청서

동·호수	동 호			
입 주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주연월일	년	월	일	퇴거예정일 년 월 일
해지사유				
퇴 거 지				

위와 같이 정선군 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 선 군 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퇴거예정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납입통지서 (군청 보관용)		수납의뢰서 (수납 은행용)		납입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아파트 동 호 20 년 월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임 대 료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관 리 비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공 동 전 기 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정 화 조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물 탱 크 청 소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합 계 (납기내)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연체료 (10%)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미 납 금 액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합계 (납기후)	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위 금액이 입금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위 금액을 귀은행(지점)에서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수납인		※ 정선군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 인이 없거나 정정한 것은 무효 입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 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징수관 귀하	
취급인		취급인		취급인	

[별표 1]

정선군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읍.면 리 번지☐ 건물의 표시

건 물 명	동	호	면 적(m ²)	비 고

위의 표시 주택을 임대차 함에 있어 정선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조정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월 임대료) "갑"은 제2조 이하의 각항에 의하여 표시한 "갑"소유의 주택을 월 원으로 임대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 1월전까지 "을"이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쌍방의 이의가 없을때에 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경신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금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①"을" 은 본계약 체결전 원을 입주보증금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주부담금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한다.)

②제1항의 입주보증금은 무이자로 "을"이 "갑"에게 예치하며, 계약 해지후 "을" 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한 때에 "갑"은 이를 원금 환불하여야 한다.

③임대료 체납금 및 공과금등의 체납금이 있을 때는 "갑"은 "을"의 승인없이도 임대보증금에서 "을"의 채무를 변제 충당 한다.

제4조(입주기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입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계산) ①"을"은 매월말까지 당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는 그달 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주 및 퇴거시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하여 납부한다.

③"을"이 임대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등의 변경) "갑"은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 "을"은 임대료 이외에 주택의 공공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분뇨수거 수수료등 청소, 위생과 유지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 수선, 기타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 한다.

제8조(수선부담) "을"(그의 가족 및 동거인과 방문자중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임대차 물건의 파손, 고장 그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조건)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최고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
2. 전부 또는 일부 무단 전대 혹은 임주권리의 양도
3. 임대료의 2개월이상 체납
4. 구조물의 무단변조, 증설 또는 원형변경
5. "을"의 동거가족 또는 동거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외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할 때
6. "을"이 무단 퇴거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퇴거 하고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해약)①"갑", "을"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제후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일 익일부터 가산하여 퇴거일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시설 및 비품)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회복을 하지 않을시는 입주보증금에서 "을"의 동의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제12조(연고권등) "을"은 위 표시계약 기간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으며 "을"은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고 소송은 최고 없이 "갑"이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준수사항) "을"은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 변경 또는 훼손할 수 없다.
2. 입주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차할 수 없다.
3. 임차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없다.
5. 기타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계약해석에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시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날 인 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정 선 군 수

"을" - 주 소 : 정선군 읍면 리 반 번지

성 명 : (인감인)